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추가 공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25. 3. 1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허가대상 ·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자

*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4. 지원내용 중 '지원품목' 정보 참조)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 참여제한 사유 >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담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25년도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신청 대상

- (추가공고 대상) 아래 일선기관 관할지역 소재 사업장(설치 소재지 기준)
 - 일선기관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음

신청가능 기관	관할지역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및 신안군)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

- (지원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50% 지원

신청 대상	지원비율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70%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50%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지원품목)

지원 품목	품목 조건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 설치, 교체 설치(설비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지원 규모 변경 가능

- (지원방식)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정
- (지원조건)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KOSHA GUIDE W-26-2023)」에 준하여 설치
 - ※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
 - 작업환경측정 미 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 원가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일부 지원

<공사(제작)원가 검토보고서 제출 및 작성비용 지원>

▶ 투자완료 시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견적서(도면, 세부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보조금 결정
-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청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검토(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최종 확정**

* 원가계산용역기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를 충족하는 업체: 등록증 또는 인증서 등으로 확인]

** 견적서, 원가계산(검토)보고서 중 최저금액과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의 합을 보조지급 기준 가격(공단 판단금액)으로 산정(단, 최초 보조금 결정금액 초과 불가)

▶ 원가검토(정산)보고서 작성 비용 인정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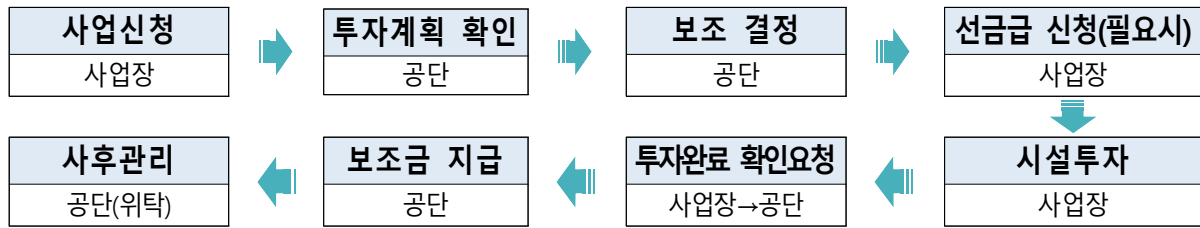
공사금액 (소요금액)	4천만원 미만	4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원가검토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공단)	40만원	50만원	60만원

예시) 근로자수 30인 사업장의 환기장치 공사금액 5,000만원인 경우

- (총 소요금액) 5,000만원(공사금액) + 60만원(보고서 작성비용 인정금액) = 5,060만원
- (보조확정금액) 5,060만원(공단판단금액) × 70%(보조비율) = 3,542만원

※ 원가 계산(정산)이 공급업체 의뢰로 진행된 경우, 원가검토 정산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6.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



① 사업신청(사업장)

- (접수·선정) 공고 기간 내 상시 접수·선정
- (신청기간) '25. 3. 1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문의 1644-8845, 덧붙임2 참조)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①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덧붙임3-1 양식 참조
②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⑩ 중소기업확인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	

※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 공지사항)

- ② (투자계획 확인)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공단)
 -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③ (보조금 결정)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공단)
 -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

④ (시설개선)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사업주)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 (덧붙임 3-2 참조)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신청(사업장 요청 시)

-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
- 선금급 신청양식(덧붙임 3-3 참조)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 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

※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 공급업체에 위임지급하지 않음

- 공사업체,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투자완료 확인)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사업주)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②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③ 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④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⑥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⑦ 지급보증보험 증권
⑧ 하자보증보험 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⑨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⑩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⑪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이상) 제출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 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지급보증보험 증권>

- ▶ 보험 계약기간은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4년(사후관리기간(3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으로 적용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5. 5. 13. (지급보증기간: 4년)
보험기간: '25. 5. 1. ~ '29. 4. 30.
-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작) 원가(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
- 설비 설치 장소,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사업장 요청시)**
 -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덧붙임3-3 참조)
 -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부가세 포함)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을 제출
-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
- ⑥ (보조금 지급) 투자완료확인 이후 1~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공단)
- ⑦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공단 위탁기관)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7.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취소 및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 ▶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문의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 예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5.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5.6.15. 경우
 - ① '25. 6. 15. + 3년 2개월 => '25. 6. 15. ~ '28. 8. 14.
 -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계약기간 설정 가능
 - 하자보증보험 발행일이 '25. 6. 1.인 경우 계약기간 : '25. 6. 15.(계산서 발행일)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5. 6. 1. ~ '28. 8. 14.
-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같음가능)
-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계 [REDACTED]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REDACTED]	피보험자	[REDACTED]
보험가입금액	[REDACTED]	보험료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5년 6월 15일 ~ 2028년 8월 14일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하자보증금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2. 신용카드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REDACTED] 담보기간 [REDACTED] 계약체결일자 [REDACTED] 계약금액 [REDACTED] 보증금율 30%		

○ (문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접수처

연번	일선기관	연락처	주소	관할지역
1	전남지역 본부	061-288-8737	(58566)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	전라남도(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장흥군)
2	제주지역 본부	064-797-7521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특별자치도
3	전북서부 지사	063-460-3642	(54150)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4	전남동부 지사	061-689-4932	(59640)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	경북동부 지사	054-271-2023	(37822)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금 지원 **신청서**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청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자택주소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청업체개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		
	업종			FAX 번호			
	소재지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용자신청금액	천원		
용자희망 금융기관	은행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재지	(-)		(전화번호 :)			
<p>「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용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p>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강일터 조성

[단위: 대(식), 천원]

투자설비명	모델/규격 (차대번호)	수량	소요 금액	자금지원 신청금액			자체 부담금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보조금	용자금		
계	-	-						-

주) "건강일터 조성"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예상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오프라인(직접)
① 견적서(원본)	○
②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명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
⑤ 대출예정확인서	×
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	×
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건강일터 조성지원**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 투자계획확인 및 결정대상자 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공급업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 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 사후 기술지도(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구매사양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3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매각,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적사항(인허가 등)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주의사항】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7)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16조 제1항 관련)

■ 건강일터 조성지원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확인(지급)요청금액		
		계	융자	보조	계	융자	보조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2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3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4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3.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5.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6.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해당 시)
 7.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5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별지 제13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양식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input type="checkbox"/>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완료일자	20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input type="checkbox"/>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 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 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20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 수 료
					없 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시본부(지역본부·지사)장					

(별지)

■ 지급받는자(2)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3)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4)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지급받는자(5)

(단위: 천원)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공급설비명 (수량)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급금액	천원	입금은행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